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3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임호선・이학영・이병진

안도걸 • 권칠승 • 이연희

복기왕 · 김주영 · 강경숙

조 국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 생활권의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① (생 략)	발전에 대한 기여)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u>있다.</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